

행정처분기준(제52조 관련)

항 목	위 반 사 항	적용법령	처 분 기 준					경 고
			취소	효 력 정 지				
				6월	3월	1월	15일	
1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제조업자	가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5조)	○					
	나.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45조	○					
	다.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	○					
	라. 제조시설·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
	마. 제조총포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2조)	 ○	 ○				
	바.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 (법 제21조)	 ○	 ○	 ○			
	사. 행정처분기간 중 계속 조업	법 제45조	○					
	아.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	법 제45조						

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	☐	☐		☐		☐
자.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☐	☐		☐		
차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	법 제45조	☐					
카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		☐	☐	☐		
타.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 (법 제9조)	☐	☐		☐		
파.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27조 영 제54조	☐	☐	☐		☐	
하.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32조 영 제59조	☐	☐	☐		☐	
거.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	법 제34조					☐	
너. 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☐	
더. 위해예방 규정	법 제38조						

준수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				○	○	
러. 자체안전교육 불 성실 또는 자체 안전점검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39조 법 제40조				○	○	
며.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○	○		○	
버. 간판 그 밖의 표 지 미게시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64조					○	○
서. 제조종류 및 시 설을 임의로 변 경하여 제조 또 는 설치한 경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조	○	○		○		
어. 응급조치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36조 영 제65조				○	○	
저. 공실의 정원 또는 정체량 초과 작업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조					○	○
처.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20조					○	○
커.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○	○	

	터.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	법 제45조	○					
	퍼.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				○	○
	허. 총포 제조·판매·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4조 제4항)					○	○
2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자·	가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7조)	○					
	나.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·대여·양도한 때	법 제45조 (법 제6조)	○					
	다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 (법 제6조)	○					
	라. 판매시설·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

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						
마.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·분사기 · 전자충격기·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2조)	○	○	○		
바. 소지 또는 양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21조	○	○	○		
사.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○	○	○		
아.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	법 제45조	○				
자.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○
차.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	법 제45조		○		○	

3) 3회 위반		○					
카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45조	○					
타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					○	
			○	○			
파.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 (법 제9조)					○	
		○	○				
하. 관리보안책임자 선임의무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27조 영 제55조						○
		○	○	○			
거. 분실·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너.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0조 영 제66조						○
					○		
더. 장부의 부실 기재 또는 미기재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				○
			○	○			
러.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64조						○
						○	
머. 화약의 변형 또	법 제4조						

	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	○	○		○		
	버.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기기준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20조 영 제30조					○	○
	서.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○	○	
	어.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○				○	○
	저. 총포 판매·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4조 제4항)			○	○	○	○
3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임대업자	가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7조)	○					
	나.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임대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·대여·양도한 때	법 제45조 (법 제6조의2)	○					
	다. 총포·도검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임대업소를	법 제45조 (법 제6조의2)	○					

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					
라.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·분사기 · 전자충격기·석공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 (법 제42조)	○	○	○		
마. 소지 또는 양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21조	○	○	○		
바.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영업	법 제45조	○				
사.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○
아.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
자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45조	○				
차.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) 1회 위반	법 제45조				○	

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		○	○			
카.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 (법 제9조)				○		
타. 분실·도난 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파.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0조 영 제66조				○	○	
하.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	○		○	
거.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64조					○	○
너.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조		○		○		
더.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○	○	
러. 임대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				○	○
머. 총포 임대·수출입 보고 의무 위	법 제45조 (법 제44조						

	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이상 위반	제4항)							○
4. 화약류 저장소 설 치사용자	가. 허가조건 결격사 유 발생	법 제45조 (법 제5조)	○						
	나.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 한 방법으로 허 가를 받은 경우	법 제45조	○						
	다.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	법 제45조 (법 제25조)	○						
	라. 지정된 기간 내 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	법 제45조 (법 제43조)	○						
	마.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법 제45조							○
	바. 지정기간 내 불사용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						
	사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 폐 지	법 제45조	○						
	아. 공공의 안녕질서 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한 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45조							

자.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24조					○	
차.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사용	법 제45조	○					
카. 분실·도난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타.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0조 영 제66조					○	
파.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이상 위반	법 제63조 영 제81조					○	
하. 저장정량 초과 저장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24조					○	
거. 보안거리 미달 (보안물건 침범)	법 제47조						감량 또는 이전 명령
너. 응급조치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36조					○	
더. 안전·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47조					○	
러.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불이행 1) 1회 위반	법 제45조						○

	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	○				○	
5. 화약류 제조·관 리보안책 임자	가. 면허의 미갱신	법 제28조	○					
	나. 화약류제조·관 리보안책임자 결 격사유발생	법 제29조	○					
	다. 금고 이상의 형 수형	법 제30조	○					
	라. 이 법에 의한 벌 금형 수형	법 제30조 (법 제29조)	○					
	마.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 한 방법으로 면 허취득	법 제30조	○					
	바.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기술 자격이 취소 또 는 정지된 경우 1) 취소된 경우 2) 정지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기술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면허 정지
	사. 면허를 다른 사 람에게 대여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
	아. 고의에 의하여 폭발 사 고 를 야 기한 경우	법 제30조	○					
	자. 과실에 의해 폭 발 사고를 야기 하여 인명을 사 상케 한 경우 1) 10명 사상 2) 5명 사상 3) 1명 사상	법 제30조		○	○	○		
	차.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 3) 3회 위반	법 제45조	○	○		○		○

	4) 4회 위반							
	카. 감독직무위반	법 제31조						
	1) 1회 위반						○	
	2) 2회 이상 위반					○		
	타. 응급조치 불이행	법 제36조						
	1) 1회 위반						○	
	2) 2회 이상 위반					○		
6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 소지사용자	가.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	법 제46조 (법 제13조)	○					
	나.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	다. 총포소지허가의 미갱신	법 제16조	○					
	라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도난·분실신고 불이행	법 제35조					○	
	마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) 1회 위반 2) 2회 위반	법 제21조						
			○	○				
	바.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	사.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의 소지운반	법 제46조 (법 제17조)	○					
	아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) 1회 위반	법 제46조 법 제47조						○

2) 2회 위반 3) 3회 위반 4) 4회 위반				○	○		
자. 취급금지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19조					○	
차.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선임의무 불이행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27조					○	
카. 화약류취급소 미설치 사용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영 제17조					○	
타. 발파 또는 연소 의 기술기준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영 제18조 내지 제23조						○
파. 화약류 폐기신고 및 기준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영 제14조 영 제24조 영 제62조					○	○
하.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 등 저장기준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24조 영 제27조					○	
거. 화약류운반신고 의무위반 또는 화약류 운반시 적재방법 기술기 준 위반 1) 1회 위반 2) 2회 이상 위반	법 제26조 법 제39조 영 제49조					○	
너. 총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훼손	법 제46조 (영 제14조의 5제1호나목 후단)	○					

비고

1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3.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4. 경찰청장·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(비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)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,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가. 가중사유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감경사유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.